장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

수신자 장성군수, 장성군의회 의장
(경유)
제 목 **2024~2026년도 장성군의회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 결정 통보**

2024년 2월 19일 우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장성군의회 의원의 2024~2026년도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결정사항을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.

□ 결정내용

구 분	결 정 내 용
2024~2026 (3년간)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 결정	**월 150만원** - 의정자료수집·연구비 월 120만원 - 보조활동비 월 30만원

붙임 심의의결서 1부. 끝.

장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

간사 이미경 위원장 임동섭
협조자
시행 의정비심의위- 1 (2024. 2. 19.) 접수
우 /
전화 전송 / /